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3-29

# 서 울 행 정 법 원

## 제 6 부

## 판 결

사 건 2015구합5894 등록세및압류처분해지청구

원 고 재단법인 [redacted]

피 고 1. [redacted]시장

2.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6. 1. 15.

판 결 선 고 2016. 2. 19.

## 주 문

1. 원고의 피고 [redacted]시장에 대한 소 중 등록세, 지방교육세 납부고지 취소 청구 부분 및 원고의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에 대한 소 중 압류처분 해지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redacted]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3-29

피고 [redacted]시장은 2015.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2,242,760원, 가산금 1,049,400원, 지방교육세 776,060원, 가산금 363,090원 합계 4,431,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이 [redacted]구 [redacted]로 [redacted] 대지 455.2㎡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07. 11. 12.자로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선택적으로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은 위 압류처분을 해지한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 4. [redacted]구 [redacted]로 [redacted] 대지 455.2㎡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슬래브지붕 지하1층/지상6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529.44㎡(이하 각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원고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였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나.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이하 '피고 [redacted]구청장'이라 한다)은 2007. 6. 1. 기준으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07. 7. 10.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전체면적 1553.07㎡(건물 연면적 1529.44㎡에 옥탑 부분 23.63㎡를 포함한 면적)에서 6층 199.14㎡ 중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표기된 면적 89.67㎡를 주택으로 보아 그에 대한 재산세 25,750원, 도시계획세 34,920원, 공동시설세 6,010원, 교육세 5,150원 합계 71,830원을{이하 '재산세(주택분) 등'이라고 한다}, 이 사건 건물 중 위 주택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 1463.40㎡(= 1553.07㎡ - 89.67㎡)를 건물로 보아 그에 대한 재산세 1,235,340원, 도시계획세 738,810원, 공동시설세 1,225,220원, 교육세 247,060원 합계 3,446,430원{이하 '재산세(건물분) 등'이라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3-29

한다)을 각 부과 · 고지하였다. 이후 피고 [redacted]구청장은 이 사건 건물의 6층 199.14㎡가 법인의 고유 업무에 사용되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면제된다고 보아, 2008. 3. 26. 당초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부과대상으로 삼은 위 6층 199.14㎡ 중 89.67㎡에 대한 재산세(주택분) 등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고, 당초 건물로 보아 재산세 부과대상으로 삼은 위 6층 199.14㎡ 중 위 주택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109.47㎡(= 199.14㎡ - 89.67㎡)를 과세면적에서 제외하여 재산세(건물분) 등 부과처분의 세액을 3,188,610원으로 감액하여 원고에게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재산세(건물분) 등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것을 '제1차 처분'이라 한다). 제1차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35210호로 재산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8. 4. 3. 일부 각하, 나머지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08누12766호) 및 상고(대법원 2008두22457호)를 하였으나 2008. 11. 18. 항소 기각 판결을, 2009. 2. 26. 상고 기각 판결을 각 받았다. 이후 원고는 2009. 3. 31. 재산세 및 그로 인한 가산금 등 합계 3,960,270원을 납부하였다.

한편, 피고 [redacted]구청장은 2007. 11. 12. 재산세(주택분) 등 및 재산세(건물분) 등의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압류하고 같은 해 12. 17. 압류 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 [redacted]구청장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지층 315.08㎡ 중 주차장을 제외한 196.90㎡를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8. 6. 19. 등록세 등 5,007,990원(지방교육세 776,060원 포함), 취득세 등 6,159,930원(농어촌특별세 517,360원 포함)을 부과하고 2008. 7. 10. 재산세 407,11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통틀어 '제2차 처분'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서울행정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3-29

원 2008구합32201호로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9. 1. 15. 기각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09누4151) 및 상고(대법원 2009두18820)를 하였으나 2009. 9. 25. 항소 기각 판결을, 2010. 1. 28. 상고 기각 판결을 각 받아 제1심 판결이 2010. 2. 2. 확정되었다. 이후 원고는 2010. 4. 30. 서울특별시에 취득세 및 등록세로 11,167,920원을 납부하였다.

피고 [redacted]시장은 원고의 납부액 11,167,920원을 가산금, 지방세의 순서로 충당하여, 가산금 합계 3,018,820원(= 취득세 가산금 1,591,180원 + 농어촌특별세 가산금 15,520원 + 등록세 가산금 1,193,330원 + 지방교육세 가산금 218,790원), 취득세 5,642,570원, 농어촌특별세 517,360원, 등록세 4,231,930원 중 1,989,170원을 납부받은 것으로 처리하였고, 그 결과 등록세 2,242,760원, 지방교육세 776,060원이 남게 되었다.

라. 피고 [redacted]시장은 2015. 4. 13. 원고에게 2008. 6. 19.자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중 위와 같이 남아있는 등록세 2,242,760원, 등록세 가산금 1,049,400원, 지방교육세 776,060원, 지방교육세 가산금 363,090원 합계 4,431,400원에 대하여 체납세액 납부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9, 11, 13 내지 1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redacted]구청장의 본안전 항변

가. 본안전 항변

피고 [redacted]구청장은 2008. 6. 19.자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에 관한 처리업무를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5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인계하였으므로 피고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3-29

[redacted]구청장은 피고적격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 [redacted]구청장이 이 사건 압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는 제5조 제1항에서 '시장은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따로 규정이 있거나 다른 자치단체와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제4호는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건당 500만 원(가산금을 제외한다) 이상의 금액을 체납한 자의 해당 자치구에 체납된 시세의 경우에는 시세를 직접 부과하거나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5항은 '제3항 제4호에 따른 체납된 시세에 대하여 구청장이 행한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구청장이 행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 및 법령에 의하면 위 조례 제5조 제4항이 구청장이 행한 처분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조례 규정들은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상·하위 기관간의 업무의 분장관계를 조정한 것일 뿐 이로써 처분을 행한 당초의 처분권자가 소급적으로 변경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에 관한 소의 상대방은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그 처분을 한 피고 [redacted]구청장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75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redacted]구청장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피고 [redacted]시장의 이 사건 처분 중 등록세, 지방교육세에 대한 취소 청구의 적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3-29

여부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 [redacted]구청장이 원고에게 2008. 6. 19. 등록세 등 5,007,990원(지방교육세 776,060원 포함), 취득세 등 6,159,930원(농어촌특별세 517,360원 포함)을 부과한 사실, 원고가 2010. 4. 30. 서울특별시에 취득세 및 등록세로 11,167,920원을 납부하였고, 피고 [redacted]구청장으로부터 위 체납세에 관한 처리업무를 인계받은 피고 서울특별시장은 원고의 위 납부액을 가산금, 지방세의 순서로 충당한 후 그에 따라 남은 등록세 2,242,760원, 지방교육세 776,060원을 2015. 4. 13. 원고에게 납부고지한 사실은 앞서 이미 보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등록세 2,242,760원, 지방교육세 776,060원은 피고 [redacted]구청장의 부과처분에 따라 이미 확정되었는바, 이후 피고 [redacted]시장의 이 사건 처분 중 등록세, 지방교육세 납부고지는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8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피고 [redacted]시장의 이 사건 처분 중 등록세, 지방교육세 납부고지를 취소해달라는 이 부분 청구는 존재하지 않는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피고 [redacted]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1]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4. 30.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피고 서울특별시장의 이 사건 처분 중 등록세 가산금 1,049,400원, 지방교육

1) 피고 [redacted]시장의 이 사건 처분 중 등록세, 지방교육세 납부고지 부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징수처분이라 할 것이나 등록세 가산금, 지방교육세 가산금 납부고지 부분은 가산금의 부과 및 징수처분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바, 이 사건 처분은 징수처분과 부과처분이 혼합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3-29

세 가산금 363,090원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2차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0. 1. 28. 패소 판결을 받아 패소 판결이 같은 해 2. 2. 확정된 사실, 원고는 같은 해 4. 30. 서울특별시에 취득세 및 등록세로 11,167,920원을 납부한 사실, 피고 [redacted]시장은 원고의 납부액을 가산금, 지방세의 순서로 충당하여 등록세 2,242,760원, 지방교육세 776,060원이 남아있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원고가 제2차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제2차 처분에 대한 가산금이 발생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등록세 가산금 및 지방교육세 가산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 [redacted]구청장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체납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피고 [redacted]구청장의 이 사건 압류는 무효이고, 선택적으로 피고 [redacted]구청장에게 이 사건 압류 해지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1) 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취지는, 한 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사람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으로서(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두611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체납액'이란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된 이후에 그 납부기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3-29

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국세와 그 가산금 등을 말한다(국세징수법 제3조 제1항). 또한, 국세징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압류 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실효되지 아니하고,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717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 양천구청장이 2007. 7. 1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재산세(주택분) 등 및 재산세(건물분) 등을 부과하였고, 같은 해 12. 17.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압류등기를 마쳤으며, 2008. 3. 26. 원고에게 재산세(건물분) 등 부과처분 중 일부를 감액한 제1차 처분을, 2008. 6. 19. 및 같은 해 7. 10. 원고에게 제2차 처분(취득세 및 등록세)을 한 사실, 원고는 2009. 3. 31. 재산세 및 그로 인한 가산금을 모두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 및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압류가 존속하는 이상 압류등기 이후에 원고에게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계속 미치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는 등록세, 등록세 가산금,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가산금이 체납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 [redacted]구청장에게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의무이행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압류해지 청구는 행정소송법 제3조가 정하고 있는 행정소송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이른바 의무이행소송으로, 현행 행정소송법의 해석상 행정소송법 제3조에 규정된 종류 이외에 다른 형태의 행정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15828 판결 등 참조), 위 이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3-29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redacted]시장에 대한 소 중 등록세, 지방교육세 납부고지 취소 청구 부분 및 원고의 피고 [redacted]구청장에 대한 소 중 압류처분 해지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기로 하고, 원고의 피고 [redacted]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숙

판사 남성우

판사 김재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3-29

# 관계 법령

■ 행정소송법

제13조(피고적격)

①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다만,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 국세징수법

제45조(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① 세무서장은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또는 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세무서장은 압류하기 위하여 부동산,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분할하거나 구분할 때에는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합병 또는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③ 세무서장은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압류할 때에는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를 갖추어 보존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압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압류는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2013. 5. 16. 조례 제54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부과 · 징수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시세의 부과 · 징수(이하 "부과징수"라 한다)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따로 규정이 있거나 다른 자치단체와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세를 직접 부과하거나 징수한다.

4.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건당 500만원(가산금을 제외한다) 이상의 금액을 체납(과년도분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의 해당 자치구에 체납된 시세(이 조에서 "고액체납시세"라고 한다)

⑤ 제3항제4호에 따른 체납된 시세에 대하여 구청장이 행한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구청장이 행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이를 행한다. 끝.